

제208회 광명시의회 제1차 정례회
2015. 7. 1.(수) ~ 7. 13.(월)

附 議 案 件

총 7건

- 광명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 지원에 관한 조례안
- 광명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광명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광명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광명시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 교통안전 관리에 관한 조례안
- 광명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광명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안



光 明 市 議 會

- 차 례 -

I. 자치행정위원회 (1건)

- 광명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II. 복지건설위원회 (6건)

- 광명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 광명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 광명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 광명시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 교통안전 관리에 관한 조례안
..... 28
- 광명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3
- 광명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안 39

광명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자치행정위원회

광명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발의년월일 : 2015년 6월 22일

발 의 자 : 오윤배 의원(대표발의)

1. 구 분 : 제 정

2. 제안이유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학교 폭력의 예방과 대책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피해 학생의 보호와 가해 학생의 교육·선도를 통하여 건강한 학교 분위기 조성과 자녀를 안심하고 학교에 보낼 수 있는 교육환경조성으로 학생을 건전한 사회 구성원으로 육성 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안 제1조 ~ 제2조)
- 시장의 책무, 학부모의 책무(안 제3조 ~ 제4조)
- 학교 폭력예방 교육 등, 관계기관등과의 협력(안 제6조 ~ 제7조)
- 협의회의 설치·기능, 구성 등, 운영, 수당 등(안 제8조 ~ 제12조)
- 사업비의 지원, 포상(안 제14조 ~ 제15조)

4. 제정조례안 : 붙임

5. 입법예고 : 의원발의(의회홈페이지 5일간 공고)

6. 관계법령 발췌서 : 붙임

7. 예산수반 사항

- 비용추계서 : 붙임

광명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 및 제10조의2에 따라 학교폭력예방과 대책 지원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에 대한 교육·선도를 통하여 건강한 학교분위기 조성과 자녀를 안심하고 학교에 보낼 수 있는 교육환경조성으로 학생을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육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 간에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모욕, 공갈, 강요·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
2. “학교”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특수학교 및 각종학교와 같은 법 제61조에 따라 운영하는 학교를 말한다.
3. “가해학생”이란 가해자 중에서 학교 폭력을 행사하거나 그 행위에 가담한 학생을 말한다.
4. “피해학생”이란 학교 폭력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학생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광명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근절하기 위하여 교육·제도 등 필요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청소년 관련 기관 등 민간의 자율적인 학교폭력 예방활동과 피해학생의 보호 및 가해학생의 선도·교육활동을 장려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청소년 관련 기관 등 민간이 건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관련 시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4조(학부모의 책무) 학부모는 가정교육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학교폭력 예방활동에 관심을 갖고 참여함으로써 건전한 교육환경 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시장은 학교폭력예방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학교폭력 예방교육 등) ① 시장은 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학교장이 실시하는 학교폭력 예방교육 외에 학교폭력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광명교육지원청 교육장(이하 “교육장”이라 한다)과 협의하여 청소년 관련 기관·단체 등을 활용하여 학교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학교폭력예방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청소년 관련기관·단체에 위탁하여 학교폭력예방 및 대처요령 등에 관한 홍보자료를 발간·배포하거나, 언론매체를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

제7조(관계 기관 등과의 협력) 시장은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근절하기 위하여 교육장, 광명경찰서장, 청소년 관련기관·단체 등과 상호 협력하여야 한다.

제8조(협의회의 설치·기능) ① 법 제10조의2에 따라 학교폭력예방과 대책 활동 지원방안 등을 협의하기 위하여 광명시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학교폭력 예방대책 수립과 기관별 추진계획 및 상호협력 지원방안에 관한 사항
2. 학교폭력예방 및 학생 선도·보호를 위한 기관간 지원망 구축에 관한 사항
3. 제3조제4항에 따른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학교폭력의 예방 및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9조(구성 등)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협의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청소년보호업무 담당국·소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교육장이 추천하는 학교폭력업무 담당 공무원
 2. 광명 경찰서장이 추천하는 학교폭력 담당 경찰 공무원
 3. 학생생활 지도 경력이 5년 이상인 교원
 4. 광명시의회 의원
 5. 판사·검사·변호사
 6. 전문단체에서 청소년보호활동을 전문적으로 담당한 사람
 7. 정신보건 전문가 및 의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8. 학교폭력 대책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사람
 9. 학교운영위원회 활동 및 청소년보호활동 경험이 풍부한 학부모
 10. 그 밖에 시장이 학교폭력예방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④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 ⑤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시의 청소년보호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제10조(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임 또는 해촉 할 수 있다.

1.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위원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3. 질병, 해외여행 등의 사유로 인하여 6개월 이상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4. 그 밖에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여 위원으로 부적당하고 인정되는 경우

제11조(협의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협의회 업무를 총괄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②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고, 정기회는 반기별 1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시장 및 교육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회의 소집요구가 있을 경우 개최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이거나 사안이 경미한 경우에는 서면 심의로 대체할 수 있다.
-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④ 위원장은 협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계공무원 및 관련 기관 전문가 등을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제공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수당 등) 시장은 협의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광명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의 규정에 따라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비밀 유지의 의무) 협의회 위원은 누구나 협의회 활동과 관련하여 알게 된 개인 정보 등에 관하여 임기 중은 물론 해촉된 후에도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14조(사업비의 지원) 시장은 학교폭력 실태에 관한 조사, 예방교육 및 홍보사업, 학교 폭력예방을 위한 학교지원사업 등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5조(포상) 시장은 학교폭력예방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기관, 단체 및 개인 등에 대하여 「광명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따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발 의	오윤배 의원 대표발의 (외 6인)
소 관	교육청소년과
입 안	의원 오윤배 (02-2680-2536)

관 계 법 령 발 취 서

관 계 법 령	내 용
<p>□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p>	<p>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근절하기 위하여 조사·연구·교육·제도 등 필요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야 한다.</p> <p>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 관련 단체 등 민간의 자율적인 학교폭력 예방활동과 피해학생의 보호 및 가해학생의 선도·교육활동을 장려하여야 한다.</p> <p>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에 따른 청소년 관련 단체 등 민간이 건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관련 시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p> <p>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p> <p>제10조의2(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회의 설치·운영) ① 학교폭력예방 대책을 수립하고 기관별 추진계획 및 상호 협력·지원 방안 등을 협의하기 위하여 시·군·구에 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회(이하 "지역협의회"라 한다)를 둔다.</p> <p>② 지역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p> <p>③ 그 밖에 지역협의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제15조(학교폭력 예방교육 등) ① 학교의 장은 학생의 육체적·정신적 보호와 학교폭력의 예방을 위한 학생들에 대한 교육(학교폭력의 개념·실태 및 대처방안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을 학기별로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p> <p>② 학교의 장은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 등을 위한 교직원 및 학부모에 대한 교육을 학기별로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p> <p>③ 학교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학교폭력 예방교육 프로그램의 구성 및 그 운용 등을 전담 기구와 협의하여 전문단체 또는 전문가에게 위탁할 수 있다.</p> <p>④ 교육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학교폭력 예방교육 프로그램의 구성과 운용계획을 학부모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그 밖에 다양한 방법으로 학부모에게 알릴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p> <p>⑤ 그 밖에 학교폭력 예방교육의 실시와 관련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제17조(학교폭력 예방교육) 학교의 장은 법 제15조제5항에 따라 학생과 교직원 및 학부모에 대한 학교폭력 예방교육을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실시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학기별로 1회 이상 실시하고, 교육 횟수·시간 및 강사 등 세부적인 사항은 학교 여건에 따라 학교의 장이 정한다. 2. 학생에 대한 학교폭력 예방교육은 학급 단위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되, 학교 여건에 따라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한 장소에서 동시에 실시할 수 있다. 3. 학생과 교직원, 학부모를 따로 교육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내용에 따라 함께 교육할 수 있다. 4. 강의, 토론 및 역할연기 등 다양한 방법으로 하고, 다양한 자료나 프로그램 등을 활용하여야 한다. 5. 교직원에 대한 학교폭력 예방교육은 학교폭력 관련 법령에 대한 내용, 학교폭력 발생 시 대응요령, 학생 대상 학교폭력예방 프로그램 운영 방법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6. 학부모에 대한 학교폭력 예방교육은 학교폭력 징후 관별, 학교폭력 발생 시 대응요령, 가정에서의 인성교육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비 용 추 계 서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 제3조(시장의 책무)
- 제11조(협의회의 운영) 및 제12조(수당 등)
- 제14조(사업비의 지원)

2. 비용 추계 결과

가. 추계의 전제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제10조2(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회의 설치·운영)

나. 구성

- 당 연 직 : 부시장, 청소년보호업무 담당 국장
- 위 원 : 교육장 추천 학교폭력 담당 공무원, 경찰공무원, 교원, 시의원, 전문가 등 20인 이내
- 주요기능 : 학교폭력예방과 대책활동 지원 방안 심의

다. 연간 소요예산

- 위원회 회의 및 운영비 : 6,400천원/년
 - 80,000원×20명×4회 = 6,400,000원

(단위 : 천원)

구분 \	년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합 계
합	계	6,400	6,400	6,400	6,400	6,400	32,000
위원회 운영 등		6,400	6,400	6,400	6,400	6,400	32,000

3. 작성자 : 교육청소년과장 박진기

광명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복지건설위원회

광명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발의연월일 : 2015년 6월 23일

발의자 : 김정호 의원(대표발의)

1. 구 분 : 일부개정

2. 제안이유

- 1994년 이전에 준공된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노후급수관 교체비용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교체계획 단지의 대부분이 교체공사비보다 장기수선충당금이 부족하여 배관교체 시 입주자의 자부담이 많아 지원사업이 저조함에 따라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 대하여는 실제로 세대당 300천원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공동주택 보조금의 지원기준(「별표 3」 변경)

4. 개정조례안 : 붙임

5. 입법예고 : 의원발의(의회홈페이지 5일간 공고)

6.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7. 예산수반사항 : 운영사항에 따라 예산수반

8. 관련법령발췌서 : 붙임

9. 기타참고사항 : 없음

광명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명시 주택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의 노후급수관 교체비용란 중 “40%를 지원하되, 세대당 300천원을 초과할 수 없다”를 “세대당 300천원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발 의	김정호 의원 대표발의 (외 6인)
소 관	주택안전과
입 안	의원 김정호 (02-2680-2509)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개 정 안																																												
<p>별표3</p> <p style="text-align: center;">공동주택 보조금의 지원기준</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style="width: 25%;">공 사 규 모</th> <th style="width: 75%;">.지원비율 및 지원금</th> </tr> </thead> <tbody> <tr> <td style="text-align: center;">2천만원 미만</td> <td style="text-align: center;">전 액 지 원</td> </tr> <tr> <td>2천만 원 이상 ~ 3천만 원 미만</td> <td>2천만 원 + 2천만 원 초과분 × 80%</td> </tr> <tr> <td>3천만 원 이상 ~ 4천만 원 미만</td> <td>2천8백만 원 + 3천만 원 초과분 × 70%</td> </tr> <tr> <td>4천만 원 이상 ~ 5천만 원 미만</td> <td>3천5백만 원 + 4천만 원 초과분 × 60%</td> </tr> <tr> <td>5천만 원 이상 ~ 6천만 원 미만</td> <td>4천1백만 원 + 5천만 원 초과분 × 50%</td> </tr> <tr> <td>6천만 원 이상 ~ 7천만 원 미만</td> <td>4천6백만 원 + 6천만 원 초과분 × 40%</td> </tr> <tr> <td>7천만 원 이상 ~ 8천만 원 미만</td> <td>5천만 원 + 7천만 원 초과분 × 30%</td> </tr> <tr> <td>8천만 원 이상</td> <td>5천3백만 원 + 8천만 원 초과분 × 20%</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보조금 지원 상한금액</td> <td>1,000세대 미만 : 50,000천 원 이하, 1,000세대 이상~2,000세대 미만 : 60,000천 원 이 하, 2,000세대 이상 : 70,000천 원 이하 ※ 단, 노후급수관 교체비용은 제외</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노후급수관 교체비용</td> <td>300세대 이하 소규모 공동주택을 제외한 교체공사비 는 <u>40%를 지원하되, 세대당 300천원을 초과할 수 없다.</u></td> </tr> </tbody> </table>	공 사 규 모	.지원비율 및 지원금	2천만원 미만	전 액 지 원	2천만 원 이상 ~ 3천만 원 미만	2천만 원 + 2천만 원 초과분 × 80%	3천만 원 이상 ~ 4천만 원 미만	2천8백만 원 + 3천만 원 초과분 × 70%	4천만 원 이상 ~ 5천만 원 미만	3천5백만 원 + 4천만 원 초과분 × 60%	5천만 원 이상 ~ 6천만 원 미만	4천1백만 원 + 5천만 원 초과분 × 50%	6천만 원 이상 ~ 7천만 원 미만	4천6백만 원 + 6천만 원 초과분 × 40%	7천만 원 이상 ~ 8천만 원 미만	5천만 원 + 7천만 원 초과분 × 30%	8천만 원 이상	5천3백만 원 + 8천만 원 초과분 × 20%	보조금 지원 상한금액	1,000세대 미만 : 50,000천 원 이하, 1,000세대 이상~2,000세대 미만 : 60,000천 원 이 하, 2,000세대 이상 : 70,000천 원 이하 ※ 단, 노후급수관 교체비용은 제외	노후급수관 교체비용	300세대 이하 소규모 공동주택을 제외한 교체공사비 는 <u>40%를 지원하되, 세대당 300천원을 초과할 수 없다.</u>	<p>별표3</p> <p style="text-align: center;">공동주택 보조금의 지원기준</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style="width: 25%;">공 사 규 모</th> <th style="width: 75%;">.지원비율 및 지원금</th> </tr> </thead> <tbody> <tr> <td style="text-align: center;">2천만원 미만</td> <td style="text-align: center;">전 액 지 원</td> </tr> <tr> <td>2천만 원 이상 ~ 3천만 원 미만</td> <td>2천만 원 + 2천만 원 초과분 × 80%</td> </tr> <tr> <td>3천만 원 이상 ~ 4천만 원 미만</td> <td>2천8백만 원 + 3천만 원 초과분 × 70%</td> </tr> <tr> <td>4천만 원 이상 ~ 5천만 원 미만</td> <td>3천5백만 원 + 4천만 원 초과분 × 60%</td> </tr> <tr> <td>5천만 원 이상 ~ 6천만 원 미만</td> <td>4천1백만 원 + 5천만 원 초과분 × 50%</td> </tr> <tr> <td>6천만 원 이상 ~ 7천만 원 미만</td> <td>4천6백만 원 + 6천만 원 초과분 × 40%</td> </tr> <tr> <td>7천만 원 이상 ~ 8천만 원 미만</td> <td>5천만 원 + 7천만 원 초과분 × 30%</td> </tr> <tr> <td>8천만 원 이상</td> <td>5천3백만 원 + 8천만 원 초과분 × 20%</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보조금 지원 상한금액</td> <td>1,000세대 미만 : 50,000천 원 이하, 1,000세대 이상~2,000세대 미만 : 60,000천 원 이하, 2,000세대 이상 : 70,000천 원 이하 ※ 단, 노후급수관 교체비용은 제외</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노후급수관 교체비용</td> <td>300세대 이하 소규모 공동주택을 제외한 교체공사비는 <u>세대당 300천원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u></td> </tr> </tbody> </table>	공 사 규 모	.지원비율 및 지원금	2천만원 미만	전 액 지 원	2천만 원 이상 ~ 3천만 원 미만	2천만 원 + 2천만 원 초과분 × 80%	3천만 원 이상 ~ 4천만 원 미만	2천8백만 원 + 3천만 원 초과분 × 70%	4천만 원 이상 ~ 5천만 원 미만	3천5백만 원 + 4천만 원 초과분 × 60%	5천만 원 이상 ~ 6천만 원 미만	4천1백만 원 + 5천만 원 초과분 × 50%	6천만 원 이상 ~ 7천만 원 미만	4천6백만 원 + 6천만 원 초과분 × 40%	7천만 원 이상 ~ 8천만 원 미만	5천만 원 + 7천만 원 초과분 × 30%	8천만 원 이상	5천3백만 원 + 8천만 원 초과분 × 20%	보조금 지원 상한금액	1,000세대 미만 : 50,000천 원 이하, 1,000세대 이상~2,000세대 미만 : 60,000천 원 이하, 2,000세대 이상 : 70,000천 원 이하 ※ 단, 노후급수관 교체비용은 제외	노후급수관 교체비용	300세대 이하 소규모 공동주택을 제외한 교체공사비는 <u>세대당 300천원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u>
공 사 규 모	.지원비율 및 지원금																																												
2천만원 미만	전 액 지 원																																												
2천만 원 이상 ~ 3천만 원 미만	2천만 원 + 2천만 원 초과분 × 80%																																												
3천만 원 이상 ~ 4천만 원 미만	2천8백만 원 + 3천만 원 초과분 × 70%																																												
4천만 원 이상 ~ 5천만 원 미만	3천5백만 원 + 4천만 원 초과분 × 60%																																												
5천만 원 이상 ~ 6천만 원 미만	4천1백만 원 + 5천만 원 초과분 × 50%																																												
6천만 원 이상 ~ 7천만 원 미만	4천6백만 원 + 6천만 원 초과분 × 40%																																												
7천만 원 이상 ~ 8천만 원 미만	5천만 원 + 7천만 원 초과분 × 30%																																												
8천만 원 이상	5천3백만 원 + 8천만 원 초과분 × 20%																																												
보조금 지원 상한금액	1,000세대 미만 : 50,000천 원 이하, 1,000세대 이상~2,000세대 미만 : 60,000천 원 이 하, 2,000세대 이상 : 70,000천 원 이하 ※ 단, 노후급수관 교체비용은 제외																																												
노후급수관 교체비용	300세대 이하 소규모 공동주택을 제외한 교체공사비 는 <u>40%를 지원하되, 세대당 300천원을 초과할 수 없다.</u>																																												
공 사 규 모	.지원비율 및 지원금																																												
2천만원 미만	전 액 지 원																																												
2천만 원 이상 ~ 3천만 원 미만	2천만 원 + 2천만 원 초과분 × 80%																																												
3천만 원 이상 ~ 4천만 원 미만	2천8백만 원 + 3천만 원 초과분 × 70%																																												
4천만 원 이상 ~ 5천만 원 미만	3천5백만 원 + 4천만 원 초과분 × 60%																																												
5천만 원 이상 ~ 6천만 원 미만	4천1백만 원 + 5천만 원 초과분 × 50%																																												
6천만 원 이상 ~ 7천만 원 미만	4천6백만 원 + 6천만 원 초과분 × 40%																																												
7천만 원 이상 ~ 8천만 원 미만	5천만 원 + 7천만 원 초과분 × 30%																																												
8천만 원 이상	5천3백만 원 + 8천만 원 초과분 × 20%																																												
보조금 지원 상한금액	1,000세대 미만 : 50,000천 원 이하, 1,000세대 이상~2,000세대 미만 : 60,000천 원 이하, 2,000세대 이상 : 70,000천 원 이하 ※ 단, 노후급수관 교체비용은 제외																																												
노후급수관 교체비용	300세대 이하 소규모 공동주택을 제외한 교체공사비는 <u>세대당 300천원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u>																																												

관 계 법 령 발 취 서

관 계 법 령	내 용
주 택 법	제43조(관리주체 등) ⑨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8항에 따른 관리주체가 공동주택의 관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광명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복지건설위원회

광명시 체육시설 관리 ·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년월일 : 2015년 6월 24일

발 의 자 : 이병주 의원(대표발의)

1. 구 분 : 일부개정

2. 제안이유

- 광명 시민운동장 인조 잔디구장을 시민들이 사용함에 있어 광명시 체육회에 등록된 유소년 축구클럽에도 사용료를 감면하여 시민운동장을 시민들이 자유롭게 이용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광명시의 체육시설 사용료 및 이용료 감면 대상 변경(안 제14조 2, 4호)

4. 개정조례안 : 붙임

5. 입법예고 : 의원발의(의회홈페이지 5일간 공고)

6. 신 · 구조문 대비표 : 붙임

7. 예산수반사항 : 해당없음

광명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명시 체육시설관리·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2호중 “행정기관장기”를 “행정기관장기, 의장기”로 한다.

제14조제4호중 “대한체육회에 등록된 광명시유소년축구클럽과”를 “광명시체육회에 등록되어 광명시를 대표하여 전국대회(엘리트체육)에 출전하는 유소년클럽 (대한축구협회 초등연맹 등록 클럽)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발 의	이병주의원 대표발의 (외 3인)
소 관	체육진흥과
입 안	이병주 의원 (02-2680-2503)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정안
<p>제14조(사용료 등의 감면)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사용료 및 이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국가 및 지방 자치단체가 주최하거나 주관 하는 행사 2. 각급 <u>행정기관장기</u> 쟁탈 경기를 위하여 사용할 경우 3. 경기도 및 전국대회 광명시 대표 선수 훈련을 위하여 경기 전 10호(1회 4시간 이내)이내 사용할 경우 4. 관내 초·중·고등학교 축구부가 있는 학교 및 <u>대한체육회에 등록된 광명시유소년 축구클럽과</u> 광명시리틀야구단에서 평일 2시간 이내 훈련을 위하여 사용할 경우 	<p>제14조(사용료 등의 감면) ----- ----- -----</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현행과 같음) 2. -- <u>행정기관장기, 의장기</u> ----- ----- 3. (현행과 같음) 4. ----- <u>광명시체육회에 등록되어 광명시를 대표하여 전국대회(엘리트체육)에 출전하는 유소년 클럽(대한축구협회초등연맹등록 클럽)과</u> ----- -----

광명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복지건설위원회

광명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연월일 : 2015년 6월 23일

발의자 : 김정호 의원(대표발의)

1. 구 분 : 일부개정

2. 제안이유

- 공영주차장 위탁관리자 대상자 및 선정방법을 개정하여 장애인의 자활·자립을 지원하고, 전통시장 및 상점가, 중소기업 등 활성화 지원을 위해 공영주차장 운영방법에 대한 다양성 모색과 효율적인 공영주차장의 관리방안을 강구하여 공영주차장의 위탁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장애인의 자활·자립을 지원하고 전통시장 및 상점가, 중소기업 등의 활성화를 위해 공영주차장 관리수탁자 자격 설정 조항 신설(안 제8조제1항 제6호, 제7호, 제8호)
- 「광명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8조제1항 관리 수탁자 자격 조항 신설(안 제8조제1항제6호, 제7호, 제8호)에 따른 제8조제4항 표의 구분 란 일부개정

4. 개정 조례안 : 붙임

5. 입법예고 : 의원발의(의회홈페이지 5일간 게시)

6.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7. 예산수반사항 : 해당없음

8. 관계법령 발췌서 : 붙임

- 「주차장법」 제8조제1항·제2항, 제13조제1항·제2항·제3항 및 제15조제1항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9조, 제65조 및 제67조
- 「유통산업발전법」 제17조의2
- 「장애인복지법」 제9조제1항

9. 그 밖의 참고사항 : 해당없음

광명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명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의 제6호부터 제8호까지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장애인 비영리 공익법인(다만, 중앙회가 법인이며 광명시지부가 있는 법인 및 단체에 한함)
7.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65조와 제67조에 따른 요건을 갖춘 상인회 또는 시장관리자
8. 「유통산업발전법」 제17조의2제2항제1호의 법인

제8조제4항 표의 구분 란 중 “3. 제1항제5호의 경우”를 “3. 제1항제5호부터 제8호까지의 경우”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발 의	김정호 의원 대표발의 (외 6인)
소 관	도시교통과
입 안	의원 김정호 (02-2680-2509)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장 노상 및 노외주차장</p> <p>제8조(공영주차장 위탁관리) ① (생략)</p> <p>1. ~ 5. (생략)</p> <p>6. <신설></p> <p>7. <신설></p> <p>8. <신설></p> <p>② (생략)</p> <p>1. ~ 2. (생략)</p> <p>③ (생략)</p> <p>④ (생략)</p>	<p>제2장 노상 및 노외주차장</p> <p>제8조 ① (현행과 같음)</p> <p>1. ~ 5. (현행과 같음)</p> <p>6. 장애인 비영리 공익법인(다만, 중앙회가 법인이며 광명시지부가 있는 법인 및 단체에 한함)</p> <p>7.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65조 및 제67조에 따른 요건을 갖춘 상인회 또는 시장관리자</p> <p>8. 「유통산업발전법」 제17조의2제2항 제1호의 법인</p> <p>② (현행과 같음)</p> <p>1. ~ 2. (현행과 같음)</p> <p>③ (현행과 같음)</p> <p>④ (현행과 같음)</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style="text-align: center;">구 분</th> <th style="text-align: center;">선정방법</th> <th style="text-align: center;">납부하여야 할 금액</th> <th style="text-align: center;">납부방법</th> </tr> </thead> <tbody> <tr> <td>1. 제1항제2호의 경우</td> <td style="text-align: center;">(생략)</td> <td style="text-align: center;">(생략)</td> <td style="text-align: center;">(생략)</td> </tr> <tr> <td>2. 제1항제1호, 제3호 및 제4호의 경우</td> <td style="text-align: center;">(생략)</td> <td style="text-align: center;">(생략)</td> <td style="text-align: center;">(생략)</td> </tr> <tr> <td>3. 제1항제5호의 경우</td> <td style="text-align: center;">수의계약</td> <td style="text-align: center;">시장이 정하는 금액</td> <td style="text-align: center;">3개월 단위로 선납</td> </tr> </tbody> </table>	구 분	선정방법	납부하여야 할 금액	납부방법	1. 제1항제2호의 경우	(생략)	(생략)	(생략)	2. 제1항제1호, 제3호 및 제4호의 경우	(생략)	(생략)	(생략)	3. 제1항제5호의 경우	수의계약	시장이 정하는 금액	3개월 단위로 선납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style="text-align: center;">구 분</th> <th style="text-align: center;">선정방법</th> <th style="text-align: center;">납부하여야 할 금액</th> <th style="text-align: center;">납부방법</th> </tr> </thead> <tbody> <tr> <td>1. 제1항제2호의 경우</td> <td style="text-align: center;">(현행과 같음)</td> <td style="text-align: center;">(현행과 같음)</td> <td style="text-align: center;">(현행과 같음)</td> </tr> <tr> <td>2. 제1항제1호, 제3호 및 제4호의 경우</td> <td style="text-align: center;">(현행과 같음)</td> <td style="text-align: center;">(현행과 같음)</td> <td style="text-align: center;">(현행과 같음)</td> </tr> <tr> <td>3. 제1항제5호부터 제8호까지의 경우</td> <td style="text-align: center;">(현행과 같음)</td> <td style="text-align: center;">(현행과 같음)</td> <td style="text-align: center;">(현행과 같음)</td> </tr> </tbody> </table>	구 분	선정방법	납부하여야 할 금액	납부방법	1. 제1항제2호의 경우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2. 제1항제1호, 제3호 및 제4호의 경우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3. 제1항제5호부터 제8호까지의 경우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구 분	선정방법	납부하여야 할 금액	납부방법																														
1. 제1항제2호의 경우	(생략)	(생략)	(생략)																														
2. 제1항제1호, 제3호 및 제4호의 경우	(생략)	(생략)	(생략)																														
3. 제1항제5호의 경우	수의계약	시장이 정하는 금액	3개월 단위로 선납																														
구 분	선정방법	납부하여야 할 금액	납부방법																														
1. 제1항제2호의 경우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2. 제1항제1호, 제3호 및 제4호의 경우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3. 제1항제5호부터 제8호까지의 경우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관 계 법 령 발 취 서

관 계 법 령	내 용
□ 주차장법	<p>제8조(노상주차장의 관리) ① 노상주차장은 제7조제1항에 따라 해당 주차장을 설치한 특별시장·광역시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관리하거나 특별시장·광역시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으로부터 그 관리를 위탁받은 자(이하 "노상주차장관리 수탁자"라 한다)가 관리한다.</p> <p>제13조(노외주차장의 관리) ① 노외주차장은 그 노외주차장을 설치한 자가 관리한다.</p> <p>② 특별시장·광역시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노외주차장을 설치한 경우 그 관리를 특별시장·광역시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 외의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p> <p>③ 제2항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위탁을 받아 노외주차장을 관리할 수 있는 자의 자격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p> <p>제15조(관리방법) ① 특별시장·광역시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설치한 노외주차장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p>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p>제19조(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등)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시장등의 상인 및 고객이 지방자치단체에서 개설하였거나 관리하고 있는 주차장(시장이나 상권활성화구역에 있거나 이웃한 것만 해당한다)을 주로 사용하는 경우 「주차장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차장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p> <p><개정 2013.5.28.></p>

관 계 법 령	내 용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p>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사용료의 감면대상이 되는 주차장 및 제20조에 따른 시설현대화사업으로 설치한 주차장에 대하여 「주차장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관리를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에 따른 대규모점포개설자 또는 대규모점포개설자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 제65조에 따른 상인회 또는 제67조에 따른 시장관리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p> <p>제65조(상인회) ① 시장등에서 사업을 직접 경영하는 상인의 전부 또는 일부는 상인회를 자율적으로 설립할 수 있다.</p> <p>② 법인인 상인회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p> <p>③ 상인회를 설립하려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인인 상인회는 정관을 작성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정관을 변경할 때에도 같다.</p> <p>④ 상인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시설 및 경영의 현대화를 위한 사업 2. 상인의 매출 증대 및 영업활성화를 위한 공동사업 3. 상인 교육 및 지역주민과의 협력사업 4. 상거래 질서유지 및 고객불만 처리에 관한 업무 5. 상업기반시설 관리업무(제67조에 따른 시장관리자의 역할을 겸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6. 그 밖에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시장등의 상권활성화를 위하여 위탁하거나 인정하는 사업 <p>⑤ 상인회는 상인회의 운영 및 제4항 각 호의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회원으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p> <p>⑥ 중소기업청장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상인회의 운영에 관한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p> <p>⑦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상인회가 제4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을 수행할 때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p> <p>⑧ 상인회의 설립과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군·구의 조례로 정한다.</p> <p>⑨ 법인인 상인회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p>

관 계 법 령	내 용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p>제67조(시장관리자)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해당 시장에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대규모점포 개설자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가 없을 때에는 제2항 각 호의 자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자(이하 "시장관리자"라 한다)를 지정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상업기반시설의 유지 및 관리 2. 화재의 예방, 청소 및 방범 활동 3. 고객의 안전유지 및 고객과 인근 지역 주민의 피해·불만의 처리 4. 상거래 질서의 확립 5. 그 밖에 시장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하는 업무 <p>② 시장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제65조에 따라 설립한 상인회나 상인조직 2. 「민법」이나 「상법」에 따라 설립한 법인 3.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시장상인을 조합원으로 하여 설립한 사업협동조합이나 협동조합 4. 그 밖에 시장·군수·구청장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업무를 수행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공공 법인·단체 <p>③ 지방자치단체는 시장관리자가 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때 해당 업무의 공공성 및 시장 개설 주체의 성격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p> <p>④ 시장관리자의 지정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군·구의 조례로 정한다.</p>
□ 장애인복지법	<p>제9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 발생을 예방하고, 장애의 조기 발견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높이며, 장애인의 자립을 지원하고, 보호가 필요한 장애인을 보호하여 장애인의 복지를 향상시킬 책임을 진다.</p>

관 계 법 령	내 용
□ 유통산업발전법	<p>제17조의2(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에 대한 지원)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매업자 50인 또는 도매업자 10인 이상의 자(이하 이 조에서 "중소유통기업자단체"라 한다)가 공동으로 중소기업의 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는 물류센터(이하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라 한다)를 건립하거나 운영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상품의 보관·배송·포장 등 공동물류사업 2. 상품의 전시 3. 유통·물류정보시스템을 이용한 정보의 수집·가공·제공 4. 중소기업공동도매물류센터를 이용하는 중소기업의 서비스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및 연수 5. 그 밖에 중소기업공동도매물류센터 운영의 고도화를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를 거친 사업 <p>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중소기업공동도매물류센터를 건립하여 다음 각 호의 단체 또는 법인에 그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중소기업자단체 2. 중소기업공동도매물류센터를 운영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와 중소기업자단체가 출자하여 설립한 법인 <p>③ 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중소기업공동도매물류센터를 건립하여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운영주체와 협의하여 해당 중소기업공동도매물류센터의 매출액의 1천분의 5 이내에서 시설 및 장비의 이용료를 징수하여 시설물 및 장비의 유지·관리 등에 드는 비용에 충당할 수 있다.</p>

광명시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 교통안전 관리에 관한 조례안

복지건설위원회

광명시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 교통안전 관리에 관한 조례안

발의연월일 : 2015년 6월 23일

발의자 : 김정호 의원(대표발의)

1. 구 분 : 제 정

2. 제안이유

- 이 조례는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에서 교통안전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교통상의 위험과 장애를 방지하고, 제거하여 교통약자를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함

3. 주요내용

- 시장 등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 교통안전기본계획 수립, 실태조사 및 사후관리에 관해 규정함(안 제4조~제5조)
- 교통안전교육, 협력체계 구축, 등·하교 교통지도 등을 규정함(안 제6조~제8조)
- 보호구역의 시설물 설치, 개선, 보수 등 재정지원 등을 규정함(안 제9조~제10조)

4. 제정조례안 : 붙임

5. 입법예고 : 의원발의(의회홈페이지 5일간 공고)

6. 예산수반사항 : 해당없음

광명시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 교통안전 관리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교통법」 제12조 및 제12조의2에 따라 지정된 광명시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에서 교통안전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교통상의 위험과 장애를 방지하고, 제거하여 교통약자를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어린이 보호구역”이란 「도로교통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13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보호하기 위하여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
2. “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이란 「도로교통법」 제12조의2제1항에 따라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노인 및 장애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

제3조(시장 등의 책무) ① 시장은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교통안전을 위한 각종 시설물의 설치·개선과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효율적인 시책을 마련하여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② 모든 시민은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교통안전을 위한 사업과 시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수립 등) ① 시장은 「교통안전법」 제17조에 따라 5년 단위로 수립되는 광명시교통안전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에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이하 “보호구역”이라 한다) 개선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보호구역의 현황
2. 개선목표 및 개선방향
3. 보호구역 안의 신호기·안전표지에 관한 사항

4. 보호구역 안의 도로부속물의 설치·정비·유지에 관한 사항
 5. 보호구역 안에 설치된 노상주차장의 폐지 또는 이전계획
 6. 보호구역에 대한 개선 및 재정 지원에 관한 사항
 7. 보호구역 안의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설치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시장이 보호구역의 보행환경 및 교통사고 예방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② 시장은 제1항의 기본계획의 시행 및 집행을 위하여 「교통안전법」 제18조에 따른 광명시교통안전시행계획(이하“시행계획”이라 한다)을 구체적으로 수립하여 매년 시행하여야 한다.
- ③ 시장은 제1항의 기본계획과 제2항의 시행계획을 수립할 때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과의 협의나 승인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5조(실태조사 및 사후관리) ① 시장은 매년 보호구역에 대한 교통안전 및 도로부속물의 실태 및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여 제4조의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도로교통법」 제12조 및 제12조의2에 따른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11조에 준용하여 보호구역에 대한 사후관리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6조(교통안전교육 등) ① 시장은 해당시설의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을 대상으로 보행안전 등에 관한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교통안전교육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1. 교통안전교육 시설을 통한 교육
2. 교통안전교육 프로그램 제작 및 보급을 통한 자체교육
3. 그 밖에 교통안전 전문교육기관 위탁교육 등

제7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교통안전 시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경찰관서, 교육청, 그 밖에 관련단체 등과 긴밀히 협력하고 필요한 경우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8조(교통지도) 시장은 초등학교 등의 장과 보육시설의 장애에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많이 다니는 시간대에 관할 보호구역의 주요 횡단보도 등의 교통안전을 위하여 교사, 학부모 또는 교통봉사단체 등으로 하여금 교통지도반을 운영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제9조(재정지원 등) ① 시장은 제8조에 따른 교통봉사단체 등이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의 안전을 위하여 교통지도를 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경비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관계기관에서 보호구역의 시설물 설치, 개선, 보수 등 사고 예방을 위한 조치를 요청할 때에는 적극 검토하여 필요한 소요예산을 편성하는 등 재정상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시장이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에 대하여 지원하였거나 지원 중인 사항은 이 조례에 따른 것으로 본다.

발 의	김정호 의원 대표발의 (외 5인)
소 관	도시교통과
입 안	의원 김정호 (02-2680-2509)

**광명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복지건설위원회

광명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년월일 : 2015년 6월 23일

발 의 자 : 김익찬 의원(대표발의)

1. 구 분 : 일부개정

2. 제안이유

- 국토교통부는 부담금 현실화를 위해 20년 만에 관련 법령을 개정, 단위부담금을 2020년까지 연차적으로 인상함에 따라 3천제곱미터 이하는 기존과 같게 하고 3천제곱미터 초과 3만제곱미터 이하, 3만제곱미터 초과 등으로 나누어 법령의 범위 내에서 100분의 100범위 내에서 부담하고자 함
(3천제곱미터 초과 3만제곱미터 이하의 경우도 1년에 제곱미터당 100원 인상을 연차적으로 하여 부담이 크지 않도록 함)
- 이케아, 코스트코, 롯데아울렛 등 3만제곱미터 이상의 백화점, 쇼핑센터 (대규모 소매점), 할인점, 전문점 등의 경우는 법령에 따라 100분의 100 범위 내에서 최고치의 교통유발부담금을 부담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제3조(단위부담금 및 교통유발계수의 조정) ① 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시설물의 단위부담금은 별표와 같다.

4. 개정조례안 : 붙임

5. 입법예고 : 의원발의(의회홈페이지 5일간 공고)

6.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7. 예산수반사항 : 해당없음

광명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명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0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오전 6시 이전 또는 정오(12시) 이후에 출근하는 것은 시차출근제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제3조의 제목“(단위부담금의 조정 등)”을“(단위부담금 및 교통유발계수의 조정)”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다음 각 호와 같다”를 “별표와 같다”로 한다.

제3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3조제2항 중 “3,000제곱미터 이상인 백화점, 쇼핑센터, 할인점, 전문점, 대형마트 등의”를 “3,000제곱미터 초과인 백화점, 쇼핑센터(대규모 소매점), 할인점, 전문점 등의”로 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발 의	김익찬의원 대표발의 (외 2인)
소 관	도시교통과
입 안	김익찬 의원 (02-2680-2538)

[별표] 시설물의 단위부담금(제3조 관련)

1. 시설물의 연도별 단위부담금

시설물의 각 층 바닥면적의 합 (부담금을 부과하지 아니하는 시설물에 해당하는 면적을 포함한다)	연도별 단위부담금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이후
3천제곱미터 이하	350원	350원	350원	350원	350원	350원	350원
3천제곱미터 초과 3만제곱미터 이하	500원	800원	900원	1000원	1100원	1200원	1300원
3만제곱미터 초과	800원	1000원	1200원	1400원	1600원	1800원	2000원

※ 다만, 2014년도 단위부담금 중 각층 바닥 면적의 합계가 3,000제곱미터 초과 3만 제곱미터 이하 백화점, 쇼핑센터, 할인점, 전문점, 대형마트는 700원으로 한다.

2. 시설물의 연도별 부담금의 산정: 시설물의 각 층 바닥면적의 합에 따른 부담금은 다음 산식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시설물의 각 층 바닥면적의 합	부담금	
3천제곱미터 이하	3천제곱미터 이하 부분 면적×350원×교통유발계수	
3천제곱미터 초과 3만제곱미터 이하	2014년	3만제곱미터 이하 부분 면적×500원×교통유발계수
	2015년	[105만원+(3천제곱미터 초과 부분 면적×800원)]×교통유발계수
	2016년	[105만원+(3천제곱미터 초과 부분 면적×900원)]×교통유발계수
	2017년	[105만원+(3천제곱미터 초과 부분 면적×1000원)]×교통유발계수
	2018년	[105만원+(3천제곱미터 초과 부분 면적×1100원)]×교통유발계수
	2019년	[105만원+(3천제곱미터 초과 부분 면적×1200원)]×교통유발계수
	2020년 이후	[105만원+(3천제곱미터 초과 부분 면적×1300원)]×교통유발계수
3만제곱미터 초과	2014년	[1천455만원+(3만제곱미터 초과 부분×800원)]×교통유발계수
	2015년	[2천265만원+(3만제곱미터 초과 부분 면적×1000원)]×교통유발계수
	2016년	[2천535만원+(3만제곱미터 초과 부분 면적×1200원)]×교통유발계수
	2017년	[2천805만원+(3만제곱미터 초과 부분 면적×1400원)]×교통유발계수
	2018년	[3천075만원+(3만제곱미터 초과 부분 면적×1600원)]×교통유발계수
	2019년	[3천345만원+(3만제곱미터 초과 부분 면적×1800원)]×교통유발계수
	2020년 이후	[3천615만원+(3만제곱미터 초과 부분 면적×2000원)]×교통유발계수

신·구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p> <p>1. ~ 9. (생략)</p> <p>10. “시차출근제”란 오전 9시를 기준으로 종사자의 50퍼센트 이상이 1시간 이상 차이나게 시간을 조정하여 출근하는 것을 말한다.</p> <p>11. ~ 13. (생략)</p>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p> <p>1. ~ 9. (현행과 같음)</p> <p>10. “시차출근제”란 오전 9시를 기준으로 종사자의 50퍼센트 이상이 1시간 이상 차이나게 시간을 조정하여 출근하는 것을 말한다. <u>다만, 오전 6시 이전 또는 정오(12시) 이후에 출근하는 것은 시차출근제에 해당하지 아니함.</u></p> <p>11. ~ 13. (현행과 같음)</p>
<p>제3조(단위부담금의 조정 등) ① 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시설물의 단위부담금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p>1. <u>각층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시설물은 각층 바닥면적 1제곱미터당 500원</u></p> <p>2. <u>각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 3천제곱미터 미만인 시설물은 각층 바닥면적 1제곱미터당 350원</u></p> <p>3. <u>법 제37조제2항에 따라 판매시설 중 각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0제곱미터 이상인 백화점, 쇼핑센터, 할인점, 전문점, 대형마트 등의 시설물은 각층 바닥면적 1제곱미터당 700원</u></p> <p>4. <u>제3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각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0제곱미터 이상인 아파트 단지내 상가 등의 시설물은 각층 바닥면적 1제곱미터당 500원</u></p> <p>② 법 제37조제2항에 따라 판매시설 중 <u>각층 바닥 면적의 합계가 3,000제곱미터 이상인 백화점, 쇼핑센터, 할인점, 전문점, 대형마트 등의 교통유발계수는 5.34로 한다.</u></p>	<p>제3조(단위부담금 및 교통유발계수의 조정) ① 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시설물의 단위부담금은 별표와 같다.</p> <p>1. ~ 4. <삭제></p> <p>② 법 제37조제2항에 따라 판매시설 중 <u>각층 바닥 면적의 합계가 3,000제곱미터 초과인 백화점, 쇼핑센터(대규모 소매점), 할인점, 전문점 등의 교통유발계수는 5.34로 한다.</u></p>

현행

개정안

<신 설>

[별표] 시설물의 단위부담금

1. 시설물의 연도별 단위부담금

시설물의 각 층 바닥면적의 합 (부담금을 부과하지 아니하는 시설물에 해당하는 면적을 포함한다)	연도별 단위부담금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이후
3천제곱미터 이하	350원	350원	350원	350원	350원	350원	350원
3천제곱미터 초과 3만제곱미터 이하	500원	800원	900원	1000원	1100원	1200원	1300원
3만제곱미터 초과	800원	1000원	1200원	1400원	1600원	1800원	2000원

※ 다만, 2014년도 단위부담금 중 각층 바닥 면적의 합계가 3,000제곱미터 초과

3만제곱미터 이하 백화점, 쇼핑센터, 할인점, 전문점, 대형마트는 700원으로 한다.

2. 시설물의 연도별 부담금의 산정: 시설물의 각 층 바닥면적의 합에 따른 부담금은 다음 산식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시설물의 각 층 바닥면적의 합	부담금	
3천제곱미터 이하	3천제곱미터 이하 부분 면적×350원×교통유발계수	
3천제곱미터 초과 3만제곱미터 이하	2014년	3만제곱미터 이하 부분 면적×500원×교통유발계수
	2015년	[105만원+(3천제곱미터 초과 부분 면적×800원)]×교통유발계수
	2016년	[105만원+(3천제곱미터 초과 부분 면적×900원)]×교통유발계수
	2017년	[105만원+(3천제곱미터 초과 부분 면적×1000원)]×교통유발계수
	2018년	[105만원+(3천제곱미터 초과 부분 면적×1100원)]×교통유발계수
	2019년	[105만원+(3천제곱미터 초과 부분 면적×1200원)]×교통유발계수
	2020년 이후	[105만원+(3천제곱미터 초과 부분 면적×1300원)]×교통유발계수
3만제곱미터 초과	2014년	[1천455만원+(3만제곱미터 초과 부분×800원)]×교통유발계수
	2015년	[2천265만원+(3만제곱미터 초과 부분 면적×1000원)]×교통유발계수
	2016년	[2천535만원+(3만제곱미터 초과 부분 면적×1200원)]×교통유발계수
	2017년	[2천805만원+(3만제곱미터 초과 부분 면적×1400원)]×교통유발계수
	2018년	[3천075만원+(3만제곱미터 초과 부분 면적×1600원)]×교통유발계수
	2019년	[3천345만원+(3만제곱미터 초과 부분 면적×1800원)]×교통유발계수
	2020년 이후	[3천615만원+(3만제곱미터 초과 부분 면적×2000원)]×교통유발계수

광명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안

복지건설위원회

광명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안

발의연월일 : 2015년 6월 23일

발의자 : 이영호 의원(대표발의)

1. 제정이유

- 본 조례는 광명시 택시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복리증진과 택시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고,
- 아울러 광명시 대중교통의 서비스 질을 향상 시켜 택시를 이용하는 시민으로부터 택시 관련 민원사항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조례임

2. 주요내용

- 가. 조례의 목적과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조부터 ~ 안 제2조까지)
- 나. 시장의 책무와 종합계획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부터 ~ 안 제5조까지)
- 다. 위원회의 설치, 구성, 위촉, 회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8조부터 ~ 안 제14조까지)
- 라. 재정지원 사업의 종류, 재정지원 심의, 보조금 신청, 관리 감독 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5조부터 ~ 안 제 20조까지)
- 마. 필요한 자료제출 요구를 할 수 있는 사항을 규정함(안 제21조)

3. 제정 조례안 : 붙임

4. 예산수반 사항 : 해당 없음

5. 관계법령 발췌서 : 붙임

광명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0조제2항과 「경기도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제8조에 따라 광명시 택시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는 데 필요한 기본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복리 증진과 택시산업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일반택시”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2호 다목의 일반택시 운송사업을 말한다.
2. “개인택시”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2호 라목의 개인택시 운송사업을 말한다.
3. “택시운수종사자”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2호 다목 및 라목에 따른 일반택시 및 개인택시 운송사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광명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에게 면허받은 일반택시와 개인택시에 한정한다.

제4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시민이 안심하고 택시를 이용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를 추진하는 한편, 운수종사자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1. 택시 승차거부 및 불친절 근절대책 추진, 운전자·승객 보호를 위한 안전·안심서비스 강화, 택시 서비스 평가 강화 등 택시 서비스 개선과 운행질서 확립
2. 운수종사자 교육프로그램 개발 지원 및 선진지 견학, 복지시설 확충 등 운수종사자 처우 개선과 수준 향상
3. 택시 청결과 친절도 향상, 이용 에티켓 홍보와 캠페인, 택시 디자인 개선 등 택시 이미지 개선과 이용문화 개선
4. 장기적인 택시 수급관리, 운행정보 관리시스템 구축 등 택시 산업 활성화와 택시 인프라 확충
5. 그 밖에 택시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5조(종합계획 수립) 시장은 택시산업의 중장기 정책 목표 및 방향을 설정하고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종합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1. 택시정책의 비전과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연차별 주요 추진과제와 그 추진방법
3. 그 밖에 택시 서비스 개선과 택시산업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6조(협력체계 구축 및 지원) ① 시장은 택시 서비스 개선 및 택시산업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광범위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기 위하여 시민, 운수사업자, 공공기관, 법인 및 단체 등과 노사정 간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7조(운송사업자 및 운수종사자의 의무) ① 운송사업자와 운수종사자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법”이라 한다) 등 택시관련 법령에 규정된 사항을 적극 이행하여야 한다.

② 일반택시 운송사업자는 친절하고 안전한 택시 서비스 제공을 위해 운수종사자 처우 개선, 경영 투명성 제고 등 합리적인 경영을 위해 노력한다.

③ 개인택시 운송사업자 및 일반택시 운수종사자는 성실한 근로 및 승차거부 근절 등 친절하고 안전한 택시 서비스 개선에 적극 노력한다.

제8조(위원회 설치)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광명시택시산업발전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1. 종합계획의 수립과 시행에 관한 사항
2. 택시요금 조정 및 요금체계 개선에 관한 사항
3. 택시 경영 합리화 및 운수종사자 복지증진 정책에 관한 사항
4. 새로운 택시정책 도입 시행, 서비스 개선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택시분야 주요 정책에 관한 사항

②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분과위원회 또는 소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그 밖에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세부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9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촉직 위원과 당연직 위원을 포함하여 16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은 어느 한 쪽 性(남성 혹은 여성)이 100분의 60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며, 당연직 위원은 융복합 도시개발사업단장, 담당과장으로 한다.

1. 택시관련 학계, 전문가, 시민단체, 관련기관 대표 등 택시정책에 식견과 전문성, 경험이 풍부한 자
2. 광명시 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2명 이내의 시의원

③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하며, 보궐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0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임기 중 사망하였을 때
2. 위원이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감당하기 어려운 때
3.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정하다고 인정할 때
4. 그 밖에 위원을 해촉할 만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제11조(위원장의 임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둔다.

② 간사는 업무담당팀장이 된다.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회의록을 기록 작성하는 등 위원회의 행정사무를 처리한다.

제13조(회의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필요시 소집할 수 있으며,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4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전문가·관계인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광명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재정지원 사업) 시장은 택시 서비스 개선과 택시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들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중장기 계획에 따라 연차별로 필요예산을 확보하도록 하여야 한다.

1. 법 제50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2. 지하철·버스·택시 등 각 교통수단 간의 연계를 위한 통합카드시스템
3. 운임, 요금결제시스템, 영상기록시스템 등 시민의 편의제공을 위한 서비스 개선을 위한 시설 또는 장비의 확충·개선사업
4. 택시이용승객의 안전을 위한 교통안전시설 설치
5. 택시호출시스템 및 첨단교통정보시스템, 택시요금 카드수수료 지원 사업
6. 택시쉼터 지원 사업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업

제16조(보조금의 신청 등) ①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광명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청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2. 보조사업의 목적과 내용
3. 보조사업에 필요한 총 경비와 지급받고자 하는 금액
4. 자기자본의 부담액
5. 보조사업 기간
6.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사항

② 그 외에 필요한 사항은 「광명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7조(보조금의 지급결정) ① 시장은 제16조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급신청서가 제출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검토하여 보조금의 지급을 결정한다.

1. 법령과 예산의 목적에 적합여부
2. 보조사업 내용의 적정 여부
3. 사업비 및 지원요구 항목 설정의 적정 여부
4. 자기자금의 부담능력 유무(사업자금의 일부를 보조하는 경우에 한함)

-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보조금 지원을 결정한 경우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 ③ 그 외에 필요한 사항은 「광명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④ 보조금 지원은 택시운송사업자에게 지원하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시장이 직접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제18조(보조금의 지원 중단 등)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해당될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하거나 이미 지원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재정 지원을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목적대로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가 중단된 경우
2.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원받은 경우
3.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
4. 시장이 경영상태, 서비스 등 종합적인 평가결과 사업의 성공가능성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5. 보조금 지원에 대한 조사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 요구를 거부하거나 허위 자료를 제출한 경우

제19조(관리감독) ① 시장은 보조금의 적정 사용 여부 등을 수시로 확인 또는 검사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조금의 지원을 받은 자는 시장의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 ② 택시 운수종사자는 보조금 지원사업 시설물·장비 등을 성실히 관리 사용하여야 하며, 고장이나 이상이 발생할 경우에는 즉시 택시운송사업자에게 통보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0조(자료제출) ① 시장은 택시사업을 체계적으로 지원·육성하고 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한 택시정책의 수립·시행 및 재정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택시운송사업조합 및 택시운송사업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라 협조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

제21조(표창) 시장은 택시 서비스 개선 및 택시산업 활성화 조성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운수종사자, 운송사업자, 시민, 단체 등에게 표창을 수여할 수 있으며, 표창에 필요한 다른 규정은 「광명시 포상 조례」를 따른다.

제2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발 의	이 영 호 의원 대표발의 (외 4인)
소 관	도시교통과
입 안	의 원 이 영 호 (02-2680-2508)

관 계 법 령 발 취 서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장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진흥

제50조(재정 지원) ① 국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 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에게 필요한 자금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1. 자동차의 고급화나 터미널의 현대화
2. 수익성이 없는 노선의 운행
3. 공동시설이나 안전관리시설의 확충과 개선
4. 낡은 차량의 대체(代替)
5. 터미널의 이전이나 규모·구조·설비의 확충·개선
6.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서비스 향상을 위한 시설·장비의 확충 또는 개선
7. 여객자동차운송가맹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설비의 설치 및 개선
8. 경제적·환경친화적 안전운전 및 관리를 지원하는 시설·장비의 확충과 개선
9. 그 밖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을 진흥하기 위한 것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시·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에게 필요한 자금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조 또는 융자의 대상 및 방법과 보조금 또는 융자금의 상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2. 여객의 안전을 위한 교통안전시설을 확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대중교통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버스교통체계를 개선하는 경우

4. 터미널이용객의 편의를 증진하기 위하여 경영이 어려운 터미널사업을 계속 하게 할 필요가 있는 경우
5. 여객자동차운송사업(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인 경우만 해당 한다)의 폐업 또는 감차를 통한 구조조정이 필요할 경우

③ 국가는 지방자치단체가 제5조제3항의 지역별 수송력 공급계획을 초과하는 차량에 대하여 감차보상을 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운송사업자에게 유류(油類)에 부과되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세금 등의 인상액에 상당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조금의 지급기준·지급방법 및 지급절차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1. 「교육세법」 제5조제1항,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제2조제1항제2호, 「지방세법」 제136조제1항에 따라 경유에 각각 부과되는 교육세, 교통·에너지·환경세, 자동차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
2. 「개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제4호바목, 「교육세법」 제5조제1항,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18조제2항제1호에 따라 석유가스 중 부탄에 각각 부과되는 개별소비세·교육세·부과금

제50조(재정 지원) ① 국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 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에게 필요한 자금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1. 자동차의 고급화나 터미널의 현대화
2. 수익성이 없는 노선의 운행
3. 공동시설이나 안전관리시설의 확충과 개선
4. 낡은 차량의 대체(代替)
5. 터미널의 이전이나 규모·구조·설비의 확충·개선
6.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서비스 향상을 위한 시설·장비의 확충 또는 개선
7. 여객자동차운송가맹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설비의 설치 및 개선
8. 경제적·환경친화적 안전운전 및 관리를 지원하는 시설·장비의 확충과 개선

9. 그 밖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을 진흥하기 위한 것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시·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에게 필요한 자금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조 또는 융자의 대상 및 방법과 보조금 또는 융자금의 상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2. 여객의 안전을 위한 교통안전시설을 확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대중교통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버스교통체계를 개선하는 경우
4. 터미널이용객의 편의를 증진하기 위하여 경영이 어려운 터미널사업을 계속하게 할 필요가 있는 경우
5. 여객자동차운송사업(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인 경우만 해당한다)의 폐업 또는 감차를 통한 구조조정이 필요할 경우
6. 제3조제1항제3호에 따른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운영하는 경우

③ 국가는 지방자치단체가 제5조제3항의 지역별 수송력 공급계획을 초과하는 차량에 대하여 감차보상을 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운송사업자에게 유류(油類)에 부과되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세금 등의 인상액에 상당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조금의 지급기준·지급방법 및 지급절차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1. 「교육세법」 제5조제1항,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제2조제1항제2호, 「지방세법」 제136조제1항에 따라 경유에 각각 부과되는 교육세, 교통·에너지·환경세, 자동차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
2. 「개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제4호바목, 「교육세법」 제5조제1항,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18조제2항제1호에 따라 석유가스 중 부탄에 각각 부과되는 개별소비세·교육세·부과금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종류) 법 제3조제2항에 따라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세분한다.

1.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

가. 시내버스운송사업: 주로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 또는 시(「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단일 행정구역에서 운행계통을 정하고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를 사용하여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 이 경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광역급행형·직행좌석형·좌석형 및 일반형 등으로 그 운행형태를 구분한다.

나. 농어촌버스운송사업: 주로 군(광역시의 군은 제외한다)의 단일 행정구역에서 운행계통을 정하고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를 사용하여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 이 경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행좌석형·좌석형 및 일반형 등으로 그 운행형태를 구분한다.

다. 마을버스운송사업: 주로 시·군·구의 단일 행정구역에서 기점·종점의 특수성이나 사용되는 자동차의 특수성 등으로 인하여 다른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가 운행하기 어려운 구간을 대상으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운행계통을 정하고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를 사용하여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

라. 시외버스운송사업: 운행계통을 정하고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를 사용하여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으로서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사업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업. 이 경우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고속형·직행형 및 일반형 등으로 그 운행형태를 구분한다.

2. 구역 여객자동차운송사업

가. 전세버스운송사업: 운행계통을 정하지 아니하고 전국을 사업구역으로 정하여 1개의 운송계약에 따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를 사용하여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 다만,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시설 등의 장과 1개의 운송계약(운임의 수령주체와 관계없이 개별 탑승자로부터

현금이나 회수권 또는 카드결제 등의 방식으로 운임을 받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따라 그 소속원(산업단지 관리기관의 경우에는 해당 산업단지 입주기업체의 소속원을 말한다)만의 통근·통학목적으로 자동차를 운행하는 경우에는 운행계통을 정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 1) 정부기관·지방자치단체와 그 출연기관·연구기관 등 공법인
- 2) 회사·학교 또는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 3)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 중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산업단지의 관리기관

나. 특수여객자동차운송사업: 운행계통을 정하지 아니하고 전국을 사업구역으로 하여 1개의 운송계약에 따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자동차를 사용하여 장래에 참여하는 자와 시체(유골을 포함한다)를 운송하는 사업

다. 일반택시운송사업: 운행계통을 정하지 아니하고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업구역에서 1개의 운송계약에 따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를 사용하여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 이 경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형·소형·중형·대형·모범형 및 고급형 등으로 구분한다.

라. 개인택시운송사업: 운행계통을 정하지 아니하고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업구역에서 1개의 운송계약에 따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 1대를 사업자가 직접 운전(사업자의 질병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하여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 이 경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형·소형·중형·대형·모범형 및 고급형 등으로 구분한다.

□ 경기도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현행)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기도 택시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는 데 필요한 기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민의 복리 증진 및 택시산업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2호다목 및 라목에 따른 일반택시 및 개인택시 운송사업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도지사 등의 책무)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와 시장·군수는 도민이 안심하고 택시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운수종사자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사항을 추진한다.

1. 택시 승차거부 및 불친절 근절대책 추진, 운전자·승객 보호를 위한 안전·안심서비스 강화, 택시 서비스 평가 강화 등 택시 서비스 개선과 운행질서 확립
2. 운수종사자 안정적인 수급 지원, 운수종사자 교육프로그램 개발 지원, 복지시설 확충과 프로그램 개발 지원 등 운수종사자 처우 개선과 수준 향상
3. 택시 청결과 친절도 향상, 이용 에티켓 홍보와 캠페인, 택시 디자인 개선 등 택시 이미지 개선과 이용문화 개선
4. 장기적인 택시 수급관리, 운행정보 관리시스템 구축 등 택시 산업 활성화와 택시 인프라 확충
5. 택시운송질서 확립 우수 시·군에 대한 포상 지원 [신설 2013.8.5.]
6. 그 밖에 택시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 <개정 2013.8.5.>

제4조(운송사업자 및 운수종사자의 의무) ① 운송사업자와 운수종사자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등 택시관련 법령에 따른 도지사 및 시장·군수 등의 명령을 적극 이행하여야 한다.

② 일반택시 운송사업자는 친절하고 안전한 택시 서비스 제공을 위해 운수종사자 처우 개선, 경영 투명성 제고 등 합리적인 경영을 위해 노력한다.

③ 개인택시 운송사업자 및 일반택시 운수종사자는 성실한 근로 및 승차거부 근절 등 친절하고 안전한 택시 서비스 개선에 적극 노력한다.

제5조(종합계획 수립) 도지사는 택시산업의 중장기 정책 목표 및 방향을 설정하고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해당 종합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한다.

1. 택시정책의 비전과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현 택시산업의 실태 및 문제점
3. 기존 택시정책의 추진실적 평가
4. 연차별 주요 추진과제와 그 추진방법
5. 필요한 재원의 규모와 조달방안
6. 그 밖에 택시 서비스 개선과 택시산업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6조(경영 및 서비스평가) ① 도지사는 택시 운영·관리시스템 등을 활용한 택시 운행실태 분석 및 택시정책의 평가와 당사자 의견 수렴 등을 위한 조사를 2년마다 실시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1년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영 및 서비스평가 기준은 별도의 규칙으로 정한다.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경영 및 서비스평가 결과에 따라 우수한 자에게 포상 및 우수 인정서 발급 등을 실시하고, 제8조에 따른 재정지원 등을 우선적으로 할 수 있다.

제7조(협력체계 구축 및 지원) ① 도지사는 택시 서비스 개선 및 택시산업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광범위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기 위하여 도민, 운송사업자, 운수종사자, 공공기관, 법인 및 단체 등과 노사정 간 협력체계를 구축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8조(재정지원 사업) 도지사는 택시 서비스 개선과 택시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필요자금의 일부를 보조 또는 융자할 수 있으며, 중장기 계획에 따라 연차별로 필요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한다. 다만, 도지사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면허에 관한 권한을 시장·군수에게 위임한 경우 이를 수입한 시장·군수도 그 필요자금의 일부를 보조 또는 융자할 수 있다.

1. 법 제50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2. 지하철·버스·택시 등 각 교통수단 간의 연계를 위한 통합카드시스템
3. 택시승차대, 카드결제기, 영상기록장치 등 도민의 편의제공을 위한 시설 또는 장비의 확충·개선사업
4. 택시이용승객의 안전을 위한 교통안전시설 설치
5. 택시호출시스템 및 택시요금 카드결제수수료·통신료 지원 사업
6. LPG(부탄) 택시연료를 경제적·친환경적 대체연료장치로 개선하는 사업
7.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9조(신고포상금 제도) ① 시장·군수는 주민 제보 활성화를 통한 건전한 운송질서 확립을 위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포상금 제도를 시·군 조례로 운영할 수 있다.

② 신고포상금 지급대상 위반행위, 지급기준·심의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시·군 조례로 별도로 정한다.

③ 신고포상금의 재원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로 인하여 부과·징수한 과태료(과징금)으로 한다.

④ 신고인의 보호를 위하여 신고접수·포상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신고와 관련하여 알게 된 신고인 인적사항 등을 누설해서는 아니된다.

제10조(자료제출) ① 도지사는 택시사업을 체계적으로 지원·육성하고 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한 택시정책의 수립·시행 및 재정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택시운송사업조합 및 택시운송사업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협조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11조(표창) 도지사는 택시 서비스 개선 및 택시산업 활성화 조성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운수종사자, 운송사업자, 도민, 단체 등에게 표창을 수여할 수 있으며, 표창에 필요한 다른 규정은 「경기도 포상 조례」를 따른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비 용 추 계 서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 광명시 택시 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는데 필요한 각종 정책에 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광명시 택시산업발전위원회 설치(안 제8조)
- 제 15조(재정지원사업)

2. 비용 추계 결과

가. 추계의 전제

- 여객자동차 운수 사업법(제50조 재정지원)
- 광명시 택시산업발전위원회 설치 구성·운영 : 16인 이내

나. 구성

- 당 연 직 : 융복합도시개발사업단장 및 과장
- 위 원 : 택시관련 학계, 전문가, 시민단체 관련 기관 대표 등, 시의원
- 주요기능 : 택시산업 발전 지원을 위한 사항을 심의

다. 연간 소요예산

- 위원회 회의 및 운영비 : 4,480천원/년
 - 80,000원×14명×4회 = 4,480,000원

(단위 : 천원)

구분 \ 년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합 계
합 계	4,480	4,480	4,480	4,480	4,480	22,400
위원회 운영 등	4,480	4,480	4,480	4,480	4,480	22,400

3. 작성자 : 도시교통과장 권경식